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이 단계적 도입되었음. 특히, 2020년 3월 에듀파인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수입원·지출원 직무 겸직(안 제26조의2)

- 일정 규모 이하의 사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경우, 규칙 제25조(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 및 제26조(수입원·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치원 특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립·경영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 및 제26조 제1항의 수입원·지출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6조의2(유치원 특례) 「교육관</u> <u>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u> <u>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u> <u>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u> <u>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u> <u>설립·경영하는 「유아교육법</u> <u>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정</u> <u>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립유치</u> <u>원의 경우에는 제25조의 수입기</u> <u>관·지출명령기관 및 제26조 제</u> <u>1항의 수입원·지출원의 직무</u> <u>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u> <u>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유아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203-6444